

1. 개정이유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‘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’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‘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’ 특별공급 근거 신설 (안 제35조 등)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‘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’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에 해당 사항을 반영

나.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근거 명확화 (안 제36조)

- 현행 규정의 문언 해석상 해외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내기업 소속 해외파견자도 인정됨을 명확하게 기술

다. 입주예약자의 다른 본청약 당첨여부 조회 근거 마련 (안 제57조)

-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사항 중 입주예약자가 다른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의 확인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제58조”를 “제58조 또는 제58조의2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

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취업한”을 “근무한”으로 한다.

3의2.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

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

제57조제7항제6호 중 “사전당첨자로”를 “사전당첨자(입주예약자를 포

함한다)로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**당첨자 및 제19조제5항, 제26조제5항**”을 “**당첨자이거나 제19조제5항, 제26조제5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특별공급 신설 등에 관한 적용례)
제35조제1항, 제36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
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(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제3조(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
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
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
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)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	제14조(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	2. 제58조 또는 제58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	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
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
에 따라 한 차례(제12호부터 제
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
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한정
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
특별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·
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
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
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<신설>

3. ~ 28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6조(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
의 특별공급) 사업주체는 제4조
제1항·제5항 및 제25조제3항
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
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
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
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
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
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
는 그 유족

3. ~ 28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
의 특별공급) -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 lines are light gray.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
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
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
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
는 그 유족

4. ~ 8의2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 근무한 -----

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
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
하는 자

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
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여 건설·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·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(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)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제45조(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)

국가

보훈부장관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

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
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
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
는 그 유족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당첨자의 명단관리) ① ~

⑥ (현행과 같음)

⑦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4. ~ 6. (생략)

제57조(당첨자의 명단관리) ① ~

⑥ (생략)

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(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그 세대에 속한 자(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,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<u>사전당첨자로</u>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(분양전환임대 주택을 포함한다)의 입주자 (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) 또 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. (생략) ⑧·⑨ (생략) 제59조(주택의 공급계약) ① 사업 주체는 제52조 및 제57조에 따 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,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, 제26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공 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	6. <u>사전당첨자(입주예약자를 포 함한다)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7. (현행과 같음) ⑧·⑨ (현행과 같음) 제59조(주택의 공급계약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당첨자이거나 제19조제5항, 제2 6조제5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</u>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-